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5210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2. 24.

판 결 선 고 2017.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9. 원고에게 한 별지 1 경정청구 내역 기재 등록면허세(합계 12억 3,980만 원), 지방교육세(합계 2억 4,796만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사무소를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하기로 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그 계획에 따라 2015. 8. 6. 주사무소를 강원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2. 이후 별지 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수차례 증자를 하고 그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합계 12억 3,980만 원, 지방교육세 합계 2억 4,796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이 사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1. 이 사건 등록면허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9. "증자에 따른 등기는 이 사건 쟁점 규정에서 정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면허세 등을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는 증자에 따른 등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이라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면제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법인등기의 종류'에 따라 면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만을 면제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에 반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 등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대상을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쟁점 규정은 '법인등기'라고만 정하고 있다. 피고가 '법인등기'를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통일적·체계적 해석에 반한다.

3) 피고와 같이 해석한다면 면제되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건당 11만 2,5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쟁점 규정이 그 금액만의 면제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이는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연혁, 문언, 혁신도시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여 볼 때,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는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4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 2011. 1. 1. 시행)이 제정되었고, 이 사건 쟁점 규정 제1항에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제2항에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나누어 규정되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유는 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 등을 일괄규정하고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정하였던 등록면허세 면제 범위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제목은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다. 그 제목 하에 제1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다. 위 제목과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라 해석하여도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보긴 어렵다.

다) 혁신도시법은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혁신도시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다. 혁신도시법 제4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도시법의 목적, 내용 등도 이 사건 쟁점 규정을 해석함에 고려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춘화

판사 이광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별지 1

경정청구 내역

자본금	납부일	경정청구세액(기납부세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1,250억원	2012.6.11.	2억 5,000만원	5,000만원
50억원	2012.7.9.	1,000만원	200만원
50억원	2012.10.5.	1,000만원	200만원
50억원	2012.11.30.	1,000만원	200만원
100억원	2013.1.2.	2,000만원	400만원
500억원	2013.2.19.	1억 원	2,000만원
1,200억원	2013.3.4.	2억 4,000만원	4,800만원
100억원	2013.6.28.	2,000만원	400만원
300억원	2013.9.16.	6,000만원	1,200만원
150억원	2013.10.16.	3,000만원	600만원
150억원	2014.6.18.	3,000만원	600만원
1,300억원	2014.7.8.	2억 6,000만원	5,200만원
200억원	2014.10.15.	4,000만원	800만원
50억원	2014.11.14.	1,000만원	200만원
325억원	2014.12.10.	6,500만원	1,300만원
224억원	2015.1.16.	4,480만원	896만원
100억원	2015.6.10.	2,000만원	400만원
100억원	2015.6.27.	2,000만원	400만원
합계(6,199억원)		12억 3,980만원	2억 4,796만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6. 법인 등기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 2천 5백 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끝.